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Recent Developments in France's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프랑스의 2006년 합계출산율은 1.98로서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은 자녀 임신 시절부터 피 부양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잔여적 복지가 아닌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보편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부터 "어린아이 환대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자의 자유 선택("libre choix")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과 탄력 근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어 직장 여성들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프랑스 출산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에서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2009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수당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률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2.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의 특징

프랑스에서 가족 지원 정책은 실업자 정책, 고령화 정책, 보건정책, 장애인 정책과 더불어 사회 보장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한 축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프랑스는 GDP의 3.5% 이상을 가족정책을 위하여 지출함으로써

그림 1.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 비교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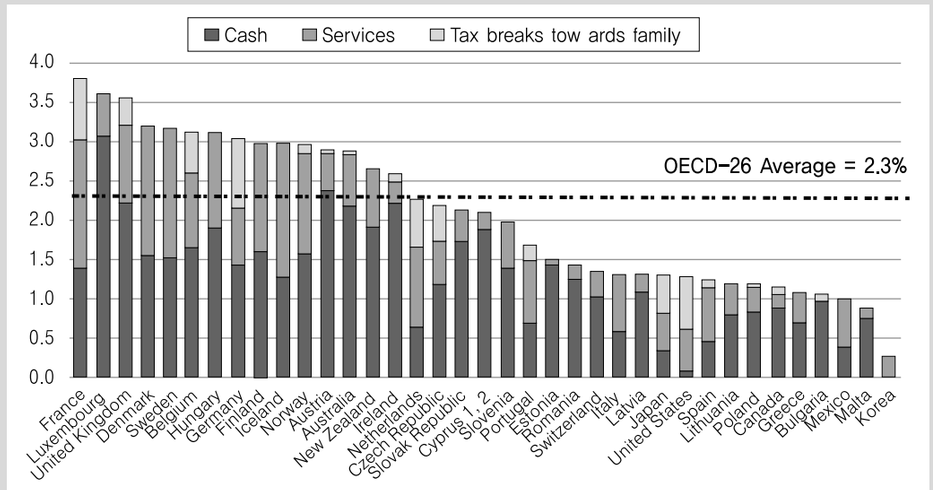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OECD 2009 Factbook"

그림 2.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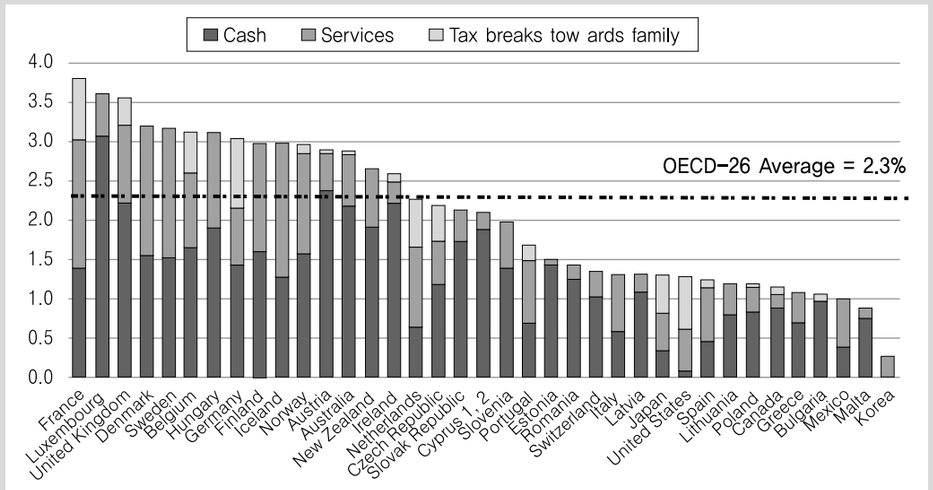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Social Expenditure Database"(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족 정책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족지원은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세금 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가족 지원에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비슷하여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에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총생산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 정책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정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그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가족을 위해 지출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저변에는 국가가 가족을 위하여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과 지자체의 조세로서 그 재정의 원천을 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은 과거 15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가족 정책의 재원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가족 지원 정책 재원의 약 3분의 2를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자체의 조세로서 충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2006년 73.4%로 유럽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두 수치간의 상반된 모습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더 이상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출산률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출산률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모두 여성 취업률이 8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출산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비롯하여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헝가리, 폴랜드의 여성 취업률은 60%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 출산률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모성과 커리어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여성 노동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프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part-time)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제 노동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혹은 노동계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출산률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성을 더 이상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부터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일과 양육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출산률 회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출산률

그림 3. OECD 국가의 여성취업율과 합계출산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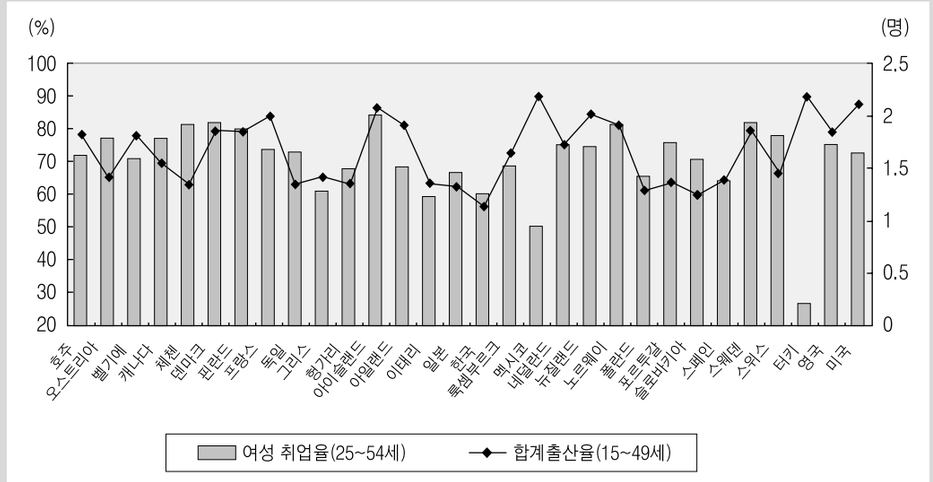

자료: 여성취업율: OECD (2007) "Babies and Bossese," 합계출산율: OECD(2009)"OECD 2009 Factbook"

회복을 위해서 인구 정책 보다는 가족 정책을 표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감소하는 출산률에 대응하고자 각 가정으로 하여금 세자녀를 갖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으로부터 여성을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바 여성 운동가들과 노동 운동가들은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취업 여성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가족의 고용 형태의 변화는 가족 정책이 표방하는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80년 초반부터 출산률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은 자녀에게 지출되는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데만 더 이상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따른 간접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2004년도에 새로 도입된 "어린아이 환영 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수당 정책은 여러번 변경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혁은 지난 2004년도에 이루어 졌다. 어린아이 환영수당은 과거에 지급하던 가족 관련 수당을 재구성한 것으로 부모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의 최근의 경향을 아동의 생애 주기별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3.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1) 자녀 임신 및 출산기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를 임신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프랑스 정부는 자녀 임신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특별 수당(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을 지급함으로써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임신기간 7개월 동안 일시불로 88.972유로를 받으며 다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그 수만큼 받는다.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1,779.43유로를 받는다. 중산층 이하에게만 지원되며 홑벌이 경우 연소득 32,813유로(자녀 1명), 39,376유로(자녀 2명), 47,251유로(자녀 3명), 한부모나 맞벌이 경우 연소득 43,363유로(자녀 1명), 49,926유로(자녀 2명), 57,801유로(자녀 3명)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1].

어린아이 환대 수당의 일환으로 자녀 출생 이후 3세 미만까지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으로 월 177.75 유로를 지급한다. "기초수당"은 중산층 이하에게만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출생이나 입양 특별 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자녀 영아기(0~3세 미만)

(1) 보육서비스[2]

3세 미만의 영아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혹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을 경우 공동 육아 시설(Créches)에서 보육하거나 인가된 보육사, 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된다. 부모들은 취업 등을 이유로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설에 자녀를 맡기든지 혹은 인가된 보육사 혹은 베이비시터에 맡기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부모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3].

공동 육아 시설인 Créches는 가족 정책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공동 육아 시설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개인 보육 도우미의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 육아 시설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서비스로 구분된다. Créches는 산전후 휴가가 끝난 4개월부터 조기교육 시설에 등록할 수 있는 3세 이전까지 아동의 보육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공동 보육 시설의 종류에는

1) 자녀수는 출생했거나 출생할 아이 수를 합한 수로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 한명 추가 당 소득 기준은 7,875유로 상향 조정된다.
2) Letablier, Marie-Thérèse(2008) "Why France has high fertility: The impact of policies supporting parents,"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vol 7(2).
3) 그러나 프랑스에서 3세 미만의 영아들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다. 2005년 현재 3세 이하 아동의 약 70%를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며, 13%를 인가된 보육사, 9%를 공동 육아 시설에서 돌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33%가 인가된 보육사, 28%가 부모(탄력 근무 이용), 20%가 공동 육아 시설, 9%가 조부모 등 친인척, 9%가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다(자료: Dress/Cnaf, Survey on Childcare, 2006).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réches de quartier," 직업장의 고용주가 운영하는 "Créches de personnel," 부모가 운영하는 "Créches parentales"가 있다. "Créches de quartier,"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나 때로는 협회나 NGO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항시 보육서비스 이외에 일시 보육을 담당하는 "halte-garderies"는 파트 파임 혹은 불규칙한 시간에 일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낮 동안 잠시 몇 시간 동안 돌보아 준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동 육아 시설은 특히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부모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보육료를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시간 이용 당 최소 0.3유로에서 최대 4유로를 지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가족수당금고 혹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공동 육아 시설의 이용율은 대도시와 지방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파리 혹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동 육아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육사에 의한 개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4].

(2) 현금 지원[5]

0~3세에 보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부모의 취업 상태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면서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혹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장생활을 중지하지 않고 자녀를 보육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éle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지원한다.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휴직급여를 사회보험 형태로 지원하지 않고 수당 형태인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으로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6]. 취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월 374.17 유로(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 552.11유로)를 지급한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 파트타임 혹은 그 이하로 일하는 경우 월 241.88 유로, 총 근로시간의 50~80%만 일하는 경우 월 139.53유로를 지급하여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수당액수는 감소한다. 한편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면서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는 월 419.83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월 317.48유로를 받는다. 한편,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경우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월 789.54 유로를 받는다(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 611.59유로).

취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동 보조금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동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간 취업활동 소득액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월 389.20유로, 맞벌이 경우 최소 월 778.40유로 이상의 소득액이 있어야 한다. "보육 방식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은 공공의 지원과 규제를 적용하면서 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 보조금으로 인하여 공동 보육 시설의 이용이 쉽지 않은 지방 거주 저소득층 이하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보육사의 자질과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보육사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육사의 수가 증가하여 대기자 아동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액수와 자녀수 그리고 고용하는 보모의 유형에 따라 "보육 방식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서로 다르다. 소득 기준과 각 소득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보모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예를 들면,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연간 소득 22,467유로 이하의 가정에서 연령이 2세인 막내자녀 보육을 위해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경우, 월 최대 668.29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소득기준과 보육자 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은 <표 1>과 같다.

3) 자녀 유아기(3~6세)[7]

프랑스에서는 3세부터 6세까지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널리 발달되어 있다. 유아조기교육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프랑스에서 유아조기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육 정책이라기보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조기교육 정책이다. 프랑스에서 조기교육 시설은 "écoles matemel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19세기에 창설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유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46년에는 조

4) 도시의 경우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공동 육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접근성 및 교통 문제로 인하여 시설 보다는 보육사에 의한 개인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5) 프랑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Vos prestations 2009.

6) 동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과거 최소 2년간의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짧은 기간인 6개월 동안만 지급되는 이유는 여성이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경우 직장 복귀 및 재취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프랑스 여성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7) Letablier, Marie-Therese(2008) "Why France has high fertility: The impact of policies supporting parents,"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vol 7(2).

표 1. 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지원 액수

(단위: 유로)

	소득 기준		
피부양자 자녀	다음 액수 이하	다음 액수 초과 않음	다음 액수 이상
1명	19,513	43,363	43,363
2명	22,467	49,926	49,926
3명	26,010	57,801	57,801
	일반 고용자		
3세 미만	441.63	278.48	167.07
3~6세	220.82	139.27	83.54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		
3세 미만	668.29	556.92	445.54
3~6세	334.15	278.47	222.78
	가정 내 보육 도우미 고용		
3세 미만	807.55	696.14	584.76
3~6세	403.78	348.08	292.39

자료: 프랑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Vos prestations 2009.

기교육 시설에 다니는 2~5세 아동이 전체의 약 27% 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2005년 현재 3~6세 거의 모든 아동들이(약 97%) 조기교육 시설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 중 약 70%가 종일반에 다니고 있다. 조기교육 시설은 무료이며 부모들은 점심식대와 방과 후 보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조기교육 학교는 8시 30분부터 시작하여 4시 30분에 하교하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한다. 영유아의 약 절반가량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이때 따뜻한 식사가 제공된다. 하교 후에는 세명 중 두명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보육되며, 나머지 아동들은 보육 도우미 혹은 학교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진다. 주로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아동들을 저녁 6시 30분까지 돌봐 준다. 조기교육 시설에서의 수업은 아동의 연령을 어린연령, 중간연령, 높은 연령의 3단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은 각각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기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격과 적절한 교육자료의 사용에 의해 보장된다. 한 교실당 약 20명을 아동들이 한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사에 의해 교육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아동의 조기 사회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조기교육 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비용과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자녀가 조기교육 시설을 다니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어, 2006년 현재 조기교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 중 35%가 방과후 혹은 공휴일에 보육사로부터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육사로서 보육담당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담당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위한 가족보조금(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받는데 연소득 17,857유로 이하의 경우 월 113.74유로, 연소득 17,857~24,553유로의 경우 월 89.92유로, 연소득 24,553유로 이상의 경우 월 74.51유로를 지원받는다. 한편, 보육사로서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가정 내 보육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보육수당"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할 액수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분기당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570유로이다. 가정 내 보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최소한의 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임금 노동자의 경우 부모 각 개인당 3분기 소득이 최소 1,167.60유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보장보험기관의 가입자여야만 하며 보험금을 납입하는 중이어야 한다.

4) 자녀 취학기[8)]

프랑스는 자녀가 가정 내에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때까지 자녀 양육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과 "가족보조금(Le complément familial)"이 있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과 가족 보조금은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급함으로써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이 출산률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족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두자녀 이상을 가진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다른 모든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다. 동 수당은 가정 내에 피부양자 자녀가 한 명만 남게 될 때 중지된다. 2009년 현재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에게는 월 123.92유로, 3명 있는 가정에게는 월 282.70유로, 4명 있는 가정에게는 월 441.48유로를 지급하며 자녀 1명 추가 당 158.78유로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가족수당 액수는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아이들이 자라나면 수당 액수 역시 증가하여 지급하고 있다. 1997년 5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11세 이후에 월 34.86유로를 가산해 주며, 16세 이후에는 월 61.96유로를 가산해 준다. 1997년 4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14세 이후에 월 61.96유로를 가산해 준다.

"가족보조금"은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인 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매월 156.60유로를 지원한다. 동 수당은 중산층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홑벌이의 경우 연 소득 34,489유로(3자녀) 혹은 40,237유로(4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만 지급된다. 한부모 혹은 맞벌이 경우 42,191유로(3자녀) 혹은 47,939유로(4자녀) 이하 가정에게만 지급된다.

8) 프랑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Vos prestations 2009.

가정 내 자녀수가 1명 추가될 때 마다 소득 기준은 5,748유로로 가산된다. 가족 보조금은 피부양자 자녀가 3명 이하 남게 될 때까지 혹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환대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5) 취약계층 자녀 지원[9)]

프랑스는 앞서 언급한 보편적 수당 이외 복지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약 4개월 동안 지급되는 긴급보호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녀 1명당 월 87.14 유로를 지원한다.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장애아 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을 지원하는데 지원 액수는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직업 활동 감소 및 중지 여부와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첫째 등급은 월 93.41유로, 둘째 등급은 252.98유로, 셋째 등급은 358.06유로, 넷째 등급은 554.88유로, 다섯째 등급은 709.16유로, 여섯째 등급은 1,010.82유로를 지원한다. 장애아 교육수당은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은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장애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월 최대 22일)"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하며 이 휴가 기간 동안 "매일 수당"이 달마다 지급된다. "매일 수당" 액수는 부부의 경우 월 41.17유로, 한부모 경우 월 48.92유로이다. 매일 수당은 3년의 한도로 310일 동안 지급될 수 있다.

"개학 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은 저소득층 6~18세 자녀의 학교개학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소득기준은 자녀 1명인 경우 연 22,321유로, 자녀 2명인 경우 연 27,472유로, 자녀 3명인 경우 연 32,623유로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 추가 1명당 소득 기준은 5,151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액수는 자녀 연령이 6~10세인 경우 연 280.76유로, 11~14세의 경우 연 296.22유로, 15~18세의 경우 연 306.51유로를 지급한다.

4. 결론

프랑스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체 사회복지 정책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GDP에서 가족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률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이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에 보다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이 많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이 개인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랑스 뿐 만 아니라 출산률이 높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여성의 권리로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과도한 업무 및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함과 동시에 자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취업 활동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생후 1년간의 기간은 영아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발달 과정상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기업 내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랑스의 높은 출산률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양육자의 상황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서비스 질과 접근 가능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일시 보육, 시간제 보육, 야간 보육 등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보육서비스 역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랑스에서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뿐 만 아니라 자녀가 피부양자로 가정에 남아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양육수당이 저소득층과 영아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지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아직은 보수성이 강한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때 저출산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9) 지원 프랑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Vos prestations 2009.